



科學技術學會의 補助育成方向

科學技術處 企劃管理室長 宋 孝 貞

1. 머릿말

第2次 世界大戰後 西獨의 復興이 漸増하는 共產勢力에 對抗하기 爲한 美國의 西歐復興政策(Marshall plan)에 依하였다고 하지만 廢墟의 갯더미 위에서 오늘날과 같은 高度의 成長을 短時日內에 다시금 이룩할 수 있었든 것은 그 實에 있어서 그들의 蓄積된 科學技術의 底力에 基因하였든 것이다. 工場과 施設은 破壞되었지만 이를 다시 復舊할 수 있는 人的能力과 科學技術의 底力은 潛在해 있었든 것이다.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끌어 가는 것은 工場이나 資本設備가 아니라 科學技術과 人的能力인 것이다.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中央行政機構로서의 科學技術處는 科學技術振興策의 一環으로 科學技術團體 및 學會의 補助育成을 그 基本目標의 하나로 設定하고 있다. 1968年度 大統領閣下의 科學技術處 初度巡視 때에도 科學技術團體 및 學會의 育成方向으로 質의水準의 向上과 自立을 促進하는 補助政策을 實踐할 것을 報告드린바 있다. 政府가 科學技術團體 및 學會에 對하여 財政的으로 補助하고 育成策을 實施하고 있는 目的은 民間의 科學技術研究活動을 促進獎勵함으로써 科學技術能力을 蓄積培養하기 爲함인 것이다. 補助의 目的이 直接的인 效果나 어떤 特定한 反對給付를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結實될 科學技術

의 開發이라는 열매를 爲하여 밑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은 促進의이고 助長의인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2. 學會補助의 方向

科學技術處 豫算에 策定된 FY 68年度 科學技術學會補助金은 1,500 萬원이며, FY 69年度 豫算에는 當初에 2,200 萬원을 要求하였으나 現年度 水準인 1,500 萬원으로 削減調整되었다. 國家 總歲出豫算에 對하여 科學技術關係 豫算이 차지하는 比率은 不過 4% 程度인데 이 中에서 다시 科學技術學會 育成을 爲한 補助金이 차지하는 比率은 極히 零細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같은 零細한 豫算으로 補助政策의 實效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은 期待할 수 없으나 國家의 財政形便을 考慮할때 不可避하다 하겠으며 要는 零細한 豫算이나 效率의 率으로 使用하는 길을 摸索해야 할 뿐이다.

科學技術處에서 實施하고 있는 學會補助의 方向은 科學技術調查研究活動의 促進과 質의水準의 向上을 爲하여 論文發表 및 學會誌 發刊을 補助하고 國際學會加入과 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 參席을 支援하는 方向으로 補助政策을 實施하고 있으나 豫算은 極히 制限되어 있는 反面에 補助對象學會는 總學會에 達하고 있어 여기에 難點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科學技術處는 다음과 같은 學會育成補助金 交付要領을 作成하고 이 基準에 따라 補助政策을 實施하

고 있다.

(1) 交付對象 및 支援事業

(1) 科學技術에 關한 調查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國內學會로서 그 實績이 顯著하고 水準이 높은 學會를 對象으로 한다.

(2) 科學技術分野中 類似한 分野의 學會가 併立되어 있는 境遇 個別的 活動을 支援하지 않고 相互 協同的 活動을 爲하여 支援한다.

(3) 學會補助金の 交付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學會雜誌發刊

나. 學術發表會

다. 國際學會加入

라. 外國學術誌上 論文發表

(2) 交付基準

補助金の 交付는 政府의 科學技術開發基本 施策에 副應하는 學會로서 比較的 自立도가 높은 學會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補助한다.

(가) 理學部門과 工學部門의 學會에 優位를 주되 特히 基礎科學部門으로서의 物理化學과 工學部門의 化工, 機械, 電氣 및 電子, 金屬, 土木部門을 重點으로 支援한다.

(나) 補助金 交付額의 策定基準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 査定한 것을 參酌하되 다음과 같은 基準에 依하여 調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① 學會誌發刊費

學會誌發刊 補助에 있어서는 過去의 刊行 實績과 質의 水準을 參酌한다.

② 學術發表會費

申請分은 基準으로 過去의 開催實績과 質의 水準을 參酌하되 年 2회 以上の 認定하지 아니한다. 但 保健部門에 있어서는 年 1 회만 認定한다.

③ 國際學會加入會費

具體的 證憑에 依하여 實費를 認定하되 加入에 따른 旅費等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④ 當該事業이 當會計年度內에 終了될 수

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3) 科學技術關係國際會議 參加旅費의 支給

科學技術處는 國際技術協力の 強化를 爲하여 科學技術關係國際會議 參加旅費로 FY 68 豫算에 23 名分에 對한 11,688,900 圓을 策定하였고 FY 69 豫算에도 亦是 23 名分에 對한 11,774,500 圓이 査定되었다. 同旅費의 效率的인 執行을 爲하여 科學技術處例規로 制定된 “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參加旅費 支給要領”에 依하면 다음과 같은 基準에 따라 國際會議參加에 所要되는 旅費, 日費, 宿泊料 및 準備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가. 支給對象

參加旅費의 支給對象은 다음 各號의 1에 當하는者로서 科學技術處長官이 參加費支給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者로 한다.

1. 研究業績이 있는 科學者

2. 科學技術分野에 專門的인 技術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3. 科學技術에 關한 教育에 從事하는者

5. 科學技術分野에 從事하는 公務員

나. 支給事由

科學技術處長官은 다음 各號의 境遇 豫算의 範圍內에서 參加旅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할 수 있다.

1. 國際會議主催國 (國際機構主體인 境遇를 包含한다)에서 全혀 參加旅費를 負擔하지 아니하는 境遇

2. 國際會議主催國이 參加旅費의 一部만을 負擔함으로써 參加者에게 旅費의 補助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다. 其他

參加旅費의 支給基準, 申請節次, 支給審査 및 支給額의 受領 節次 等은 同例規의 定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科學技術學會는 學會誌發刊, 學術發表會 開催, 國際學會 加入, 外國學術誌上 論

文發表를 爲하여 財政的인 補助를 받을 수 있는 以外에 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參加旅費의 惠澤을 받을 수 있다.

3. 補助管理

科學技術學會에 對한 補助金의 支給은 補助金管理法 및 同施行令, 科學技術處에서 制定한 科學技術 學會育成 補助金 交付要領 그리고 豫算會計法에 따라 支給하고 있으나 이의 效率的인 補助管理를 爲하여 補助金의 審査, 決定 및 補助事業의 統制에 對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1) 補助金의 審査決定

科學技術處에서 制定한 “科學技術學會 育成 補助金交付要領”에 依하면 學會補助金 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는 交付申請書를 韓國科學技術 團體總聯合會에 提出하고 同聯合會는 申請된 個別事業에 對한 意見書와 交付額을 査定하여 科學技術處에 一括提出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韓國科學技術 團體總聯合會는 學會補助에 對한 第一次的인 先審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勿論 同聯合會의 意見과 査定結果가 決定的인 것은 아니며 다만 參酌하는 것에 不過 하지만 科學技術 團體를 總括하는 同聯合會를 育成하고 補助事業選定의 慎重을 期한다는 趣旨에서 同聯合會에 第1次的인 先審權을 委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科學技術處는 韓國科學技術 團體總聯合會의 意見과 査定結果를 參酌하여 關係法規에 依據 査定한 後 科學技術處에 構成되는 審査機構의 協議를 거쳐 補助金의 交付與否와 그 限度額 및 交付條件等を 決定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點은 補助對象學會와 補助對象事業을 選定하는 基準이 未備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學會補助의 一貫性있는 뚜렷한 方向이 提示되지 않고 補助對象의 選定에 있어 優先順位와 質的인 面이나 價値性의 問題가 一律的으로 다루어질 憂慮가 多分히 있는 것이다. 科學技術處에서 作成한 “學會補助金支給調整基準”에서는 學會補助의 支給對象을 科學技術關係 國內學會의

(但 協會 및 研究所는 除外) 學會誌發刊, 學術發表會, 國際學會加入 및 外國學術誌上 論文發表費에 限하고 補助의 方向은 政府의 科學技術開發基本施策에 副應하는 學會로서 比較的 自立도가 높은 學會에 對하여 理學部門과 工學部門의 學會에 優位를 주되 特히 基礎科學部門으로서의 物理, 化學과 工學部門의 化工, 機械, 電氣 및 電子, 金屬, 土木部門을 重點支援한다고만 規定하고 있다. 勿論 여러 차례의 審議査定過程을 通하여 이러한 問題가 慎重히 다루어 지겠지만 學會補助의 뚜렷한 方向을 提示하는 意味에서라도 對象選定의 具體的인 基準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2) 補助事業의 統制

補助金이 交付되면 補助事業者는 法令의 規定, 補助金交付決定의 內容과 條件, 또는 法令에 依據한 科學技術處長官의 處分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誠實히 그 補助事業을 遂行하여야 하며 그 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事情의 變更으로 補助事業內容을 變更하거나 補助事業에 所要되는 經費의 配分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또한 事情의 變更으로 그 補助事業을 引繼, 中斷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勿論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要한다. 그리고 補助事業者는 科學技術處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助事業의 遂行狀況 및 實績을 報告하여야 하며 會計年度가 終了한 때에도 亦是 報告하여야 한다. 이 補助事業實績報告書에는 그 補助事業遂行에 所要된 經費를 明白히한 計算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그리고 補助金에 對하여는 別途의 計定을 設定하고 自體의 收入 및 支出을 明白히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其他 科學技術處長官은 效率的인 補助金管理를 爲하여 補助事業者에 對한 命令 取消 監查權을 發動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그리고 科學技術處長官은 이러한 統制事項을 交付條件에 明示하여야 할 것이다. ■